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2BL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www.lottecastle.co.kr>)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서류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서류접수 우편물 발송 시 빠른 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2020년 11월 10일(화) 도착분까지 한합니다.(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 외 1인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견본주택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해당 예약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는 분양 상담전화(☎1811-6868)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1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으로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주택(제1항제3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신설, '20.4.17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신설, '20.4.17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토지임대주택(제1항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 가목)	5년간		
-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 당첨자(제3조제2항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6.) 현재 수원시 및 수도권(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2018.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 및 제4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대구성원)

-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해외거주 인정 기준

-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약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합니다.
-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합니다.
-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합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 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

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함.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함.

※ 단, 용인시 영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함.

※ 단, 화성시 반정동에서 수원시 망포동, 신동, 곡반정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에는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

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의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안내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일반 1순위(해당) (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수원시 2년 미만 거주,	일반 2순위 (수도권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 (특공/일반 당첨자)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	---------------------------	------------------------------	------------------------------	--------------------	-------	-----------------------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수도권 거주				
일 정	10월 26일(월)	10월 27일(화)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1월 04일(수)	11월 05일(목) ~ 11월 10일(화)	11월 16일(월) ~ 11월 24일(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등기 우편 접수 (건본주택 방문 불가)	예약제 운영 (10:00 ~ 16:00)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건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29-3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 49408호(2020.10.1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75-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 17층 9개동 총 609세대[특별공급 276세대(일반[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57세대, 신혼부부 111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3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총공급	특별공급						일반 분양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0001140	01	079.3030	79	79.3030	24.2902	103.5932	49.1266	152.7198	53.3600	31	3	3	6	-	2	14	17	2
		02	084.9836A	84A	84.9836	25.1996	110.1832	52.6456	162.8288	57.1800	273	27	27	54	8	19	135	138	18
		03	084.8531B	84B	84.8531	25.2008	110.0539	52.5648	162.6187	57.0900	29	2	2	5	1	2	12	17	2
		04	084.9835C	84C	84.9835	25.4955	110.4790	52.6455	163.1245	57.1800	107	10	10	21	3	7	51	56	7
		05	084.9882D	84D	84.9882	25.6356	110.6238	52.6484	163.2722	57.1800	128	12	12	25	4	8	61	67	9
		06	107.4260A	107A	107.4260	31.2624	138.6884	66.5483	205.2367	72.2800	23	-	2	-	-	-	2	21	3
		07	107.1115B	107B	107.1115	31.1928	138.3043	66.3535	204.6578	72.0700	18	-	1	-	-	-	1	17	-
합 계											609	54	57	111	16	38	276	333	41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41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609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m², 세대)

주택형 (타입)	동 (라인)	층	해 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1-03-26	2021-07-26	2021-11-26	2022-03-25	2022-06-27	2022-09-26	
079.3030 (79)	205동(4호) 208동(4호)	1층	2	327,097	207,903	535,000	53,500	53,500	53,500	53,500	53,500	53,500	53,500	160,500
		2층	2	327,097	219,903	547,000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54,700	164,100
		3층	2	327,097	230,903	558,000	55,800	55,800	55,800	55,800	55,800	55,800	55,800	167,400
		4층	2	327,097	236,903	564,0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56,400	169,200
		5층이상	23	327,097	241,903	569,0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170,700
084.9836A (84A)	201동(2호) 202동(2,3호) 203동(2호) 204동(2,4호) 205동(2,3,5호) 206동(2,3,5호) 207동(2,4호) 208동(2,3,5호) 209동(5호)	1층	12	350,513	218,487	569,0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56,900	170,700
		2층	17	350,513	230,487	581,0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58,100	174,300
		3층	18	350,513	242,487	593,000	59,300	59,300	59,300	59,300	59,300	59,300	59,300	177,900
		4층	18	350,513	248,487	599,000	59,900	59,900	59,900	59,900	59,900	59,900	59,900	179,700
		5층이상	208	350,513	254,487	605,000	60,500	60,500	60,500	60,500	60,500	60,500	60,500	181,500
084.8531B (84B)	209동(2,3호)	1층	1	349,962	218,038	568,0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170,400
		2층	2	349,962	230,038	580,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174,000
		3층	2	349,962	242,038	592,000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177,600
		4층	2	349,962	248,038	598,0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179,400
		5층이상	22	349,962	254,038	604,0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181,200
084.9835C (84C)	201동(3호) 202동(4호) 203동(3호) 204동(3호) 206동(4호) 207동(3호) 209동(4호)	1층	6	350,513	217,487	568,0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56,800	170,400
		2층	7	350,513	229,487	580,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58,000	174,000
		3층	7	350,513	241,487	592,000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177,600
		4층	7	350,513	247,487	598,0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179,400
		5층이상	80	350,513	253,487	604,0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60,400	181,200
084.9882D (84D)	201동(1호) 202동(1호) 203동(1호) 204동(1호) 205동(1호) 206동(1호) 207동(1호) 208동(1호) 209동(1호)	1층	7	350,513	214,487	565,0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56,500	169,500
		2층	9	350,513	227,487	578,0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173,400
		3층	9	350,513	239,487	590,000	59,000	59,000	59,000	59,000	59,000	59,000	59,000	177,000
		4층	9	350,513	245,487	596,000	59,600	59,600	59,600	59,600	59,600	59,600	59,600	178,800
		5층이상	94	350,513	251,487	602,000	60,200	60,200	60,200	60,200	60,200	60,200	60,200	180,600
107.4260A (107A)	201동(4호) 202동(5호) 203동(4호)	2층	2	443,076	285,924	729,000	72,900	72,900	72,900	72,900	72,900	72,900	72,900	218,700
		3층	3	443,076	300,924	744,000	74,400	74,400	74,400	74,400	74,400	74,400	74,400	223,200
		4층	3	443,076	307,924	751,000	75,100	75,100	75,100	75,100	75,100	75,100	75,100	225,300

		5층이상	15	443,076	315,924	759,0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227,700
107.1115B (107B)	201동(4호) 202동(5호) 203동(4호)	8층이상	18	441,789	317,211	759,0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75,900	227,7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오피스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품목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0.10.26. (월요일) (청약Home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건본주택(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 세대)

구 분			79	84A	84B	84C	84D	107A	107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9	1	2	3	-	-	16
	국가유공자		1	5	1	2	3	-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1	1	-	-	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4	-	2	2	-	-	9
	중소기업 근로자		-	4	-	2	2	-	-	8
	북한이탈주민		-	2	-	1	1	-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2	14	1	5	6	1	1	30
	서울, 인천 거주자(50%)		1	13	1	5	6	1	-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5	41	4	16	19	-	-	85
		일반공급(25%)	1	13	1	5	6	-	-	2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동일 순위내 경쟁 시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		-	8	1	3	4	-	-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	19	2	7	8	-	-	38
합 계			14	135	12	51	61	2	1	2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2018.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단,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세대당 1회 한정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자격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점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불가함
자격 요건	공통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정 세대수	• 54세대 ,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분양가격 9억이하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등),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요건을 갖춘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정세대수	• 57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분양가격 9억 이하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또한,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청약신청자와 같은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 2018.05.08」 및 관련 법령에 따름.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수원시 및 경기도에 우선공급하며,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하며, 수원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 경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정세대수	• 111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분양가격 9억이하 • 소득완화 대상 타입 (공급금액 6억 이상 9억 이하) : 84A, 84B, 84C, 84D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수 산정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 130%이하	5,554,984원 ~ 7,221,478원	6,226,343원 ~ 8,094,245원	6,938,355원 ~ 9,019,860원	7,594,084원 ~ 9,872,308원	8,249,813원 ~ 10,724,756원	8,905,542원 ~ 11,577,20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 140%이하	6,665,981원 ~ 7,776,976원	7,471,611원 ~ 8,716,879원	8,326,026원 ~ 9,713,696원	9,112,901원 ~ 10,631,716원	9,899,775원 ~ 11,549,737원	10,686,650원 ~ 12,467,75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정세대수	16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분양가격 9억 이하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수원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배정세대수	38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 분양가격 9억이하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 별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 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2) 청약부금 변경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3)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수원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않음]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3)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수원시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자격을 충족하게 됨.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해당지역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지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수원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는 자	
2순위	전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2순위 청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수원시에 2년 이상(2018.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

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수원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의 3)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청약신청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공급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천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청약 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우편접수 원칙)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6.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매매 등 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①호와 제②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상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7호의 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자)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의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한 공급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09.01.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 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한청약자가 정당한계약을 하거나, 정당한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IV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신청방법
특별 공급	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2020.10.26. (월요일) (인터넷청약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원칙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IBK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	2020.10.27. (화요일) (인터넷청약 08:00 ~ 17:30)	
		기타지역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2020.10.28. (수요일) (인터넷청약 08:00 ~ 17:30)	
	2순위		수도권 거주자	2020.10.29. (목요일) (인터넷청약 08:00 ~ 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불가)허용됩니다. (방문접수시간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원시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접수해야 함. (타지역 청약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수원시 2년 이상(2018.10.1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가능
 - 수원시 2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수원)" 1순위에서 청약 마감시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라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안내[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0.11.04. (수요일) · 확인방법	· 일시 : 11월 16일(월) ~ 11월 24일(화)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29-3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예약제 운영 (10:00 ~ 16:00)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 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1.04.(수) ~ 2020.11.13.(금) (10일간)
인 터 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 대 폰 문자서비스	대 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1.0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우편(빠른 등기) 제출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	------------------	--------------	----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0.11.05.(목요일) ~ 11.10.(화요일) 6일간	제출 방법 : 빠른 등기우편 접수 제출 장소 :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29-3)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16)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위해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계약 시 작성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

			존속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에 한함. 그 외 서류 인정불가)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계약 시 작성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이전 자녀 출산 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 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제출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턴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턴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세무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류

접수 이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②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세무서 ②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세무서 ②,③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 시 작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11.16.(월요일) ~ 11.24.(화요일) 9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29-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기간 내에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하며, 계약기간 내 예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분양사무소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등과 관련한 사항(제출대상 및 서류, 제출기한 등) 등은 추후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휴대폰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대리인 계약 불가) ※ 본인 발급용에 한함.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홈페이지 서식 게시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발급용에 한함.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 공급금액 중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계약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또한, 선납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함
-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금 납부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 01010201홍길동 / 102동 1701호 김철수 → 01021701김철수)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279837-04-004552	(주)하나자산신탁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가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취급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위탁자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자후불제) 이자후불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금대출 기간 동안에도 계약자 본인이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후불제 적용 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자는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상담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편의시설, 작은도서관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공사

(1)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79	84A	84B	84C	84D	107A	107B	비고
발코니 확장 금액		21,390,000	24,924,000	24,738,000	24,738,000	25,020,000	34,875,000	34,875,000	
계약금(10%)	계 약 시	2,139,000	2,492,400	2,473,800	2,473,800	2,502,000	3,487,500	3,487,500	
잔금(90%)	입주지정일	19,251,000	22,431,600	22,264,200	22,264,200	22,518,000	31,387,500	31,387,500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KB국민은행	279837-04-004594	(주)하나자산신탁

-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입니다.
-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당사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형별 등 사업주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구성			설치 위치	판매가	제조사
79	일반형	기본	(2대)	거실+안방	3,500,000	LG전자
		전체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6,500,000	
	공기청정형	기본	(2대)	거실+안방	4,300,000	
		전체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8,100,000	
84A	일반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4,75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600,000	
	공기청정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6,00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9,650,000	
84B	일반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4,75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600,000	
	공기청정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6,00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9,650,000	
84C	일반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4,75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600,000	
	공기청정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6,00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9,650,000	
84D	일반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4,75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600,000	
	공기청정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6,00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9,650,000	
107A	일반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4,89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8,100,000	
	공기청정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6,20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10,200,000	
107B	일반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4,89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8,100,000	
	공기청정형	기본	(3대)	거실+안방+주방	6,200,000	
		전체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10,20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 및 안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전기기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제조사	적용주택형	금 액	비 고
하이브리드 쿡탑	쿠쿠	전 타입	500,000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삼성	전 타입	5,4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수납장 특화	삼성	전 타입	1,250,000	
빌트인 와인냉장고	원텍	107 전 타입	1,200,000	

※ 본 공사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 가구선택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적용 주택형	금 액	비 고
안방 슬라이딩 붙박이장	84A, 84B, 84D	3,600,000	
안방 쇼룸형 드레스룸	79	3,500,000	
	84C	3,600,000	
	107 전 타입	4,000,000	
침실1 붙박이장	전 타입	1,500,000	
퍼펙트 유틸리티	79	1,500,000	
	84 전 타입	1,900,000	
	107 전 타입	3,500,000	주방 장식장 포함
캐슬 홈가든	84A, 84B, 84C	3,300,000	
	107 전 타입	3,600,000	
미세먼지 방충망	79	2,400,000	
	84 전 타입	2,800,000	
	107 전 타입	3,200,000	
현관 중문	전 타입	1,600,000	
세대분리형	84D	20,000,000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

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홈페이지 상품안내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284902	롯데건설(주)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284915	롯데건설(주)	

- ※ 계약금 10%, 잔금 90%입니다.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당사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별도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홈페이지 분양안내에 게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터키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IX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홈페이지 분양 안내상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 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선행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하기로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 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후 개별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공용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에서 인허가를 진행 및 변경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공간거리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설비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일부 제한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동 출입구 캐노피,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도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사 또는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

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네이밍 포함) 및 동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주동 Core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지하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잠원초등학교이나, 인접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시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예정)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태장초,대선초,망포초 등) 학생 배치여건을 반영하여 통학구역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영통중학군 3구역(망포중, 잠원중, 영동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 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 분		설 계 공 지 내 용
공동	도로 및 기반시설	당 사업장의 지구단위구역 내에는 공원, 도로, 준주거용지, 연결녹지,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내 소유 녹지가 아니며,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그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도로 및 보도 선형 및 패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당 사업장 주변의 완충녹지 및 수변공원, 주변여건 등은 개발계획 및 인허가 사항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의 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2020.07.24.일자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당초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시기,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수변공원은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원천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변경(수변공원의 폭원, 형태, 수목·수종·수량, 시설물 등)될 수 있음.
		당사업지 공동주택 1, 2블럭과 서측 곡선지구(코오롱하늘채)와의 도로가 연결될 계획이 있으나, 향후 인허가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동측으로 '망포4지구 2단지 및 3단지'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타단지의 서측에 위치한 주동과 인접한 주동의 경우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계약전 인접 단지의 개발계획 및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 후 인접 단지 및 공원 등의 구성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웬스설치	보행 및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외곽 경계에 투시형웬스 설치 예정이나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차량출입구 외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인허가	당 사업장은 2019년 3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당 사업장은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협의하여 향후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외관 디자인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관 변경 동의서를 받을 예정임.
		당 사업장은 화성시 사업승인 인가 이후 수원시 경계 조정으로 당초 받은 인허가 사항이 승계되었으며, 수원시 지침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특히, 수원시 해당 법적 조례 중 주차장 계획(주차대수 등), 반자 및 층의 높이 등의 사항은 기존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시공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홍보물 등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분양홍보물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경관조명 설치 위치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위세대의 제공품목, 마감형태, 가구디자인, 유상옵션 상품구성 등으로 설치하였으나,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 현관문을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 및 유튜브 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장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전에 사이버 건본주택 등을 참고하시어 전시장품 및 유상옵션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조건 확인 후 계약체결 바람.
		건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면도 등을 게시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본공사시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분양 홍보물에 쓰인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 페브릭, 연출용 조명과 소품은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건본주택 내 부착되어 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주체는 건본주택을 미운영,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마감재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석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으로 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현관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단종, 품귀 또는 수급 불가, 품질 확보 및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음.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세대 내부 마감자재는 세대 타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79㎡, 84Am ² , 84Bm ² , 84Cm ² 에 Natural 컨셉, 84Dm ² Modern컨셉, 107Am ² , 107Bm ² Elegance컨셉이 적용되었음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음
단지	공통사항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리어(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동의 외관 색채, 특화 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 형태 및 마감재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으로 인한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 2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된 층수임)는 지정석재(돌출 마감은 페인트 마감) 마감임. 단, 외관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시 석재 적용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건축경관통합심의 의견에 따라 아파트 외관 입면에 돌출된 기둥 패턴이 적용되는 동이 있으며, 돌출된 기둥은 전체 페인트마감으로 저층부에도 석재 마감이 붙지 않음. (페인트마감 - 1블럭 : 101동 후면, 102동 후면, 103동 전후면, 105동 전면, 106동 후면, 107동 전후면, 108동 전후면 / 2블럭 : 201동 후면, 202동 후면, 203동 전후면, 204동 전면, 206동 후면, 207동 전면, 208동 전면)
		또한, 일부 동은 외관 디자인으로 인한 돌출 프레임이 적용됨.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서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음.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주동의 형태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지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집광판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각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공사시 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인근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그로 인해 옥상부에는 별도의 조경시설이 없음.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공사상의 여건으로 인해 위치 및 설치 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각종 인증은 인허가절차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특히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며,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기 설치됨.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필로티	각 동별 주동 출입구 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단지출입구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총 2개소, 보행자 출입구는 1블럭, 2블럭이 각각 다르게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보행자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통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수 있음
	단지의 부출입구 차량 출입차선은 인허가 기준으로 분양홍보물 상에 표현되어 있으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변경 예정임. 하지만 인허가 과정상의 여건에 따라 기존 인허가 완료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음.
	(인허가 완료 기준 : 부출입구 입차 1차선, 출차 1차선 / 변경 예정 : 부출입구 입차 2차선, 출차 1차선)
	단지의 차량 주, 부출입구 인근 주동(101,105,106,107동/201,202,206,207,208동 등)의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블럭 101동, 107동 사이 /2블럭 201동, 202동 사이에는 대형 문주구조물이 설치되며, 부출입구 주변은 부문주 및 열주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시야 및 채광 간섭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배치 및 주동 형태상의 이유로 인하여 각 동의 전면이 직각으로 마주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세대의 시야간섭 및 프라이버시, 일조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주거 공용부분인 전실 및 엘리베이터홀, 로비 등은 공용부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101동 남동측과 북동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102동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동측으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동측으로 야외운동공간, 북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북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북서측과 남서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 북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107동 북측과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북측으로 휴게 및 야외운동공간,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201동 북동측으로 휴게 및 야외운동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202동 북동측으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204동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북동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205동 북측으로 휴게공간, 남동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206동 북측으로 휴게 및 야외운동공간,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207동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208동 북측과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남서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209동 북동측과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북서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수경시설의 종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1블럭 102~105동 / 2블럭 202~205동 사이 지상1층에 작은도서관, 지상2층에 관리사무소가 각 단지별로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시야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블럭 107동 / 2블럭 209동 하부 지상1층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각 단지별로 설치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각종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쓰레기보관소는 1블럭 8개소, 2블럭 9개소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인허가 도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보관소의 거리가 상이함. 쓰레기보관소로 인해 근처 세대에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106, 107동 / 201, 208동 인근에 학원차량 대기공간 및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키즈스테이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티하우스는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파고라형 시설물로, 별도의 냉난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동 하부 지하1층 제연웬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웬룸 급기 DA 가 돌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사 웬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이동될 수 있음. 각동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환기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지붕층 및 지상돌출구간, 계단하부, 별도 구획공간과 같은 내, 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 (101동, 102동, 105동, 107동, 202동, 203동, 205동, 209동)의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5동/205동 인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해당 공간에는 주차공간이 설치되지 않음.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우수저수조/정화조/열교환실/음식물 쓰레기수거장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층(103동,104동,108동 인근/203동,207동,208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위치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세대창고 공간,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지하주차장은 단지 서측 주출입구 및 동측 부출입구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별 주차거리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 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주동하부에 세대당 1개소의 세대창고가 적용되며, 각 세대의 세대창고 위치는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입주시 배정되며 배정된 위치에 따라 각 세대에서 세대창고 간의 이동거리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본공사 시 세대창고 내 선반이 설치되고, 창고의 외부는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철망으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지하층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어, 결로 습기 등에 취약할 수 있으며, 세대창고의 제조사 및 사양, 마감, 선반형태 및 위치, 시공디테일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창고가 설치되는 지하층 공간은 별도의 천정 마감이 설치되지 않아 지하층에서 필요한 설비 배관 등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 통로 높이는 2.3m (주차구역은 2.1m) 택배차량 진입 불가함.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최신법 적용 전 심의 및 인가 받은 사업장으로 구법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차구획 사이즈는 일반주차 폭 2.4M, 확장주차 폭 2.5~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쉼터, 옥외계단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1블럭 101동 공동주택 하부, 102동 인근 / 2블럭 202동 공동주택 하부, 203동 인근 배치로, 각 단지 서측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작은도서관은 1블럭 102~105동 / 2블럭 202~205동 사이 지상 1층에 별동으로 각 단지별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실내골프, 피트니스, GX룸, 탁구장, 탈의샤워실, 다목적주민운동시설 등)가 1블럭에 102~105동 / 2블럭에 202~205동 사이 지하2층~지하1층에 별동으로 각 단지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1블럭 107동/ 2블럭 209동 하부 지상1층에 각 단지별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부대시설	

		작은도서관의 도서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탁구장)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에는 실외기 설치공간이 내/외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보도 및 조경공간,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팬가동에 따른 바람 등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6동,107동/201동,208동 인근에 차량 대기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설치됨.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남에 유의하시기 바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경비실	경비실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무인택배함	무인택배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로비 내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할 수 있음.
	기타사항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우수저수조/정화조/열교환실/음식물 쓰레기수거장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층(103동,104동,108동 인근/203동,207동,208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지역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공통사항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 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3,6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안방 앞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다용도실 제외)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음. 세대환기용 기계식환기장비가 실외기실 및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 천정마감으로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음.
		84D, 107A, 107B타입 세대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 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을 할 수 없는 외부공간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쓰레기 및 우수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 및 선홀통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당 사업장 층간완충재는 T30가 시공되며, 사양은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 사업장은 실외기실 내부에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최하층 제외)되어 있으며, 위층세대의 피난사다리가 아래층세대 천정에 노출됨. 피난 사다리 설치로 인해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지 않음
		단위세대는 대형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및 가구 등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경치수 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세대 내부 마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확장 미선택 세대의 경우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MMA)이 시공되고 주방벽 악세사리가 확장시와 상이하게 적용되며 주택형별 주방상판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함.
		다용도실 손세탁볼 하부장은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만 제공되며, 비확장 기본제공품목인 2단 세탁선반은 중복 제공되지 않음.
		다용도실 손세탁볼 하부장은 공간의 쓰임새를 감안하여 걸레받이 없이 설치됨. 목재소재의 특성상 물청소 및 물사용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개방형 발코니 세대의 테라스 바닥타일은 현장 여건 및 하자 방지 등을 위하여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아일랜드 식탁 포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비확장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와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님.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창호공사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 입면개선 및 성능향상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시 제공되는 이 중 창호의 프레임은 외부창호 최외측면에 아사(ASA)가 적용될 예정임. (내부 프레임은 적용되지 않음)
		건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창호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외관 디자인에 따라 실시공시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 방충망은 고정형으로 설치됨.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으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외부골조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되어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 및 개방형 발코니 부분과 상이함
		세대 내 현관방화문, 실외기실, 개방형 발코니의 철재도어의 디자인, 강판의 재질, 부속품의 형태 및 기능, 경첩의 개소 등은 추후 실 시공시 동등이상으로 변경/교체될 수 있음.
		84D 타입 거실 측면에는 침실과 동일한 높이의 이중창이 설치되며 분할형 이중창 하부 높이가 안전상의 이유로 거실보다 높게 설치됨.
		건본주택에 설치한 개방형 발코니 난간 및 유리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난간의 형태, 재질, 디자인, 높이, 설치 디테일,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전기/설비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도어)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욕실 세면대, 양변기, 욕실 액세서리,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환기장치 및 배관이 실외기실 천장 혹은 발코니 천장에 노출되어 설치됨.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응선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안방, 거실)은 설치되지 않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원패스키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키 디자인은 입주 시 확정됨. 통신사 스마트홈 IoT 서비스는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스피커 별도 구매) 스마트홈 IOT연동 가전제품은 통신사 스마트홈 IoT사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내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카탈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거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유상옵션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바람. 비확장 선택 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별도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현관중문 도어의 형태 및 천장물딩 디테일은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안방 슬라이딩 불박이장 옵션 유무에 따라 가구설치용 날개벽 등의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캐슬홈가든 옵션 유무에 따라 거실 및 우물천정의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하며, 홈가든은 84Am², 84Bm², 84Cm², 107Am², 107Bm²타입 판상형에서만 선택 가능함. 79m², 84Cm², 107Am², 107Bm² 타입은 외벽창호로 인하여 안방 소류형 드레스룸으로 옵션선택 가능함. 와인냉장고 선택 옵션은 107Am², 107Bm²타입에서만 선택 가능함.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하이브리드쿡탑 선택시 3구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음.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 * 84D 독립세대 선택옵션의 경우, 각종 기전설비(위생, 환기, 소방 등)의 시스템 구성을 위해 세대 내/외부 PD 혹은 실외기실, 천장 반자 공간등을 공유할 수 있음. 독립세대의 환기를 위해 환기장비가 천장 내부 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별도 운영되는 사항 : 급수, 급탕, 난방 별도 계량, 실외기 설치공간, 세대계량기 별도, 세대분전반 별도, 통신단자함 별도, 홈네트워크 별도(월패드포함), 현관문(FSD)내부현관문(디지털도어록 포함) 통합 운영되는 사항 : 세대내/외부PD, 실외기실, 천장 반자공간, 피난공간(하향식대피공간) 등의 기타 별도 운영되는 사항 외의 사항
--	--	--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⑤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⑧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 ⑨ 상기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은 1블럭, 2블럭에 대한 설계 관련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음

■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이내 설치 및 계획된 기반시설 현황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2블럭)

구 분	학 교		공원·녹지		도 로		하 천		공영차고지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설 치			근린공원 112 (글빛누리공원)	·사업지 동측(망포동 위치)	대로 1-42 (동탄지성로) 대로 1-39 (동탄원천로) 광로 2-6-1 (덕영대로)	·사업지 동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서측(수원화성 위치) ·사업지 북측(망포동 위치)	원천리천	·사업지 서측(수원화성 위치)	공영차고지 11 (수원남부버스)	·사업지 서측(곡반정동 위치)
계 획	초등학교 109 (가칭 망포2초) 중학교 48	·사업지 동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동측(망포동 위치)	수변공원 3-1 연결녹지 35 완충녹지 518 어린이공원 228	·사업지 서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북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남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북동측(망포동 위치)	중로 1-187 중로 2-266-1 대로 3-65-1 중로 1-188-1	·사업지 동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서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남측(망포동 위치) ·사업지 북측(망포동 위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0-101-0009700 호	259,293,3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

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 고
건축감리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1,969,710,600	
전기	(주)이명이앤씨 건축사사무소	422,627,000	
통신/소방 감리	(주)지티엘이엔지	27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관리형토지신탁

1.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대산플러스,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시공사 롯데건설(주)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2. 본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사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산플러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함.
3.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산플러스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산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산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4.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대산플러스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음.
5. 본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6. 본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함.
7. 본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명
(주)하나자산신탁 (법인등록번호 : 110111-1714818)	(주)대산플러스 (법인등록번호 : 135811-0191072)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29-3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견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811-6868

※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현장 및 건본주택 >

